

국립대학법안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1209

발의연월일 : 2014. 7. 17.

발의자 : 정진후 · 심상정 · 서기호 · 박원석 · 김제남 · 유기홍
장하나 · 안민석 · 박홍근 · 김현미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립대학이 그동안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유사하게 징수해 온 기성회비와 관련하여 법령상 징수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국립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 1심과 2심에서 정부와 국립대학이 패소하는 등 국립대학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와 관련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는 이유는 국립대학이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설

립·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임. 실제로 현행 법령체계에서 국립대학의 지위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에 불과하고, 단순한 교육행정 집행기관에 불과함.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국립대학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역할을 등한시하고 국립대학 운영의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음.

이에 국립대학이 국가기관이라는 바탕 위에 정부의 지원의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율적 운영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바, 국립대학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립대학을 헌법이 부여한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독립적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주체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은 물론, 학생을 선발할 때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국립대학의 총장, 총장의 임용,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사무의 위탁, 부총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국립대학의 조직, 부설학교, 국립대학 구성원과 자치조직, 국립대학평의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국립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학인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사. 국립대학의 회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국립대학병원회계, 국립대학치과병원회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로 구분함(안 제19조).
- 아. 국립대학 예산 및 결산의 공개, 일반회계 예산 운영에 관한 특례 및 지원금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자.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을 위하여 국립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차.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5조).
- 카.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의 총장은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6조).

법률 제 호

국립대학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로서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법적 지위) 국립대학은 헌법이 부여한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독립적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주체이다.

제4조(명칭 등) 국립대학의 명칭·소재지 및 교육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적 책무 등)

- ① 국립대학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립대학은 양질의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립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 ④ 국립대학은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선발과 교육, 장학 등의 계획 및 결과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국립대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국립대학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7조(총장)

- ① 국립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학교를 대표하며 교무(校務)를 총괄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총장의 임용)

- ① 총장은 해당 국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국립대학의 총장을 임용하거나 국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국립대학의 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국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국립대학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국립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국립대학의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 구성원 자치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해당 국립대학 외의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국립대학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립대학의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⑦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총장을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교육부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⑧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7조제3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을 '총장'으로 본다.

제10조(선거사무의 위탁) 선거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을 ‘총장’으로, ‘제24조제3항제2호’를 ‘제8조제3항’으로,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본다.

제11조(부총장)

- ①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국립대학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選任)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부총장은 국립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국립대학의 조직)

- ① 국립대학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직의 보직을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설학교)

- ① 국립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이하 이 조에서 ‘사범대학’이라 한다) 및 교육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부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의 장 또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무를 통할한다.

제14조(국립대학 구성원과 자치조직)

- ① 국립대학의 구성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학생으로 한다.
- ② 국립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은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의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대한민국헌법」 제22조에 따른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 2.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국립대학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 ③ 국가와 국립대학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자치조직의 명칭·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대학평의위원회)

- ① 국립대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1.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기타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 조직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국립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대학평의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 국립대학 구성원 자치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대학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대학평의원의 수가 전체 대학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 제16조(공무원의 정원)
- ① 국립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안전행정부와 교육부는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의 공무원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 대학 간의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배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 제17조(교직원 등)
- ① 국립대학에 교직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 ② 국립대학의 교원 및 조교는 총장이 임용하고, 겸임교원 등은 총장이 임용하거나 위촉한다.
- ③ 국립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국립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교육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국립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립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립대학의 직원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임용하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은 총장이 가진다.
- ⑦ 국립대학의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국가

공무원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18조(대학인사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3. 그 밖에 국립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3장 재무회계

제19조(회계의 구분 등)

- ① 국립대학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회계로 구분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회계
 3.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기금회계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회계
 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회계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대학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 ③ 총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결 재무제표 및 각 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 및 결산의 공개 등)

- ① 총장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 예산 및 결산, 제19조제3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해당 국립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19조제3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일반회계 예산 운영에 관한 특례 등)

- ① 국립대학에 지급되는 지원금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관 예산에 국립대학별 총액으로 계상한다.
- ② 총장은 총액으로 지원받은 예산을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에서 전용·이용·이체(이하 '전용등'이라 한다)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으며, 전용등을 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국가재정법」 제24조와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중 그 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대학평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해 지출로 명시된 금액은 명시이월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일반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원금의 지급 절차)

- ① 총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는 총장이 편성하되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제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장 지원 및 육성 등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①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② 국가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제공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을 위하여 국립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국가의 재정지원 계획 수립 등)

- ① 국가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절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고등교육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립대학의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제25조(국립대학발전위원회)

- ①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의 총장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립대학 연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국립대학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3. 국립대학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 4.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립대학의 총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국립대학의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발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종합계획 및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성회의 회계 폐지 등)

-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립대학의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립대학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는 폐지하되, 기성회의 회계 결산 잔액은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에 학생 1인당 기성회비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에 등록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기성회 직원의 임용 특례)

- ① 종전의 국립대학 기성회의 직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종전의 국립대학 기성회의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국립대학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국립대학 기성회비의 2분의 1 교부(안 부칙 제2조)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에 학생 1인당 기성회비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에 등록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안 제12조(국립대학의 조직), 제13조(부설학교), 제15조(대학평의원회), 제18(대학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각각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국립대학의 조직) 및 제45조(부설학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교육공무원법」 제5조(대학인사위원회)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안 제25조는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의 총장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위원회 회의 참석비 지급 기준¹⁾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더라도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안 부칙 제3조는 종전의 국립대학 기성회의 직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대학별 기성회 직원의 임금 지급 기준이 다양하고 기성회 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립대학에 기성회비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 1]과 같이 2016년 7,152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3조 7,821억원으로 추정된다.

¹⁾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4. 1)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 참석비는 1일당 100,000원이며,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표 1 | 국립대학 기성회비 총액의 2분의 1 교부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 2016~2020년 (단위 : 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기성회비 50% 교부(안 부칙 제2조)	7,152	7,353	7,558	7,770	7,988	37,821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김 중 화
예산분석관 임 준 기
(02-788-4646, jangsan@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은 국립대학 기성회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재정에서 교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된다.²⁾

비용추계 방법

추가 재정소요 = 국립대학 기성회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교부

2. 국립대학 기성회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교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안 부칙 제2조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립대학에 학생 1인당 기성회비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에 등록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안 제2조³⁾는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⁴⁾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로서

²⁾ 제정안은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기성회비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에 등록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을 국가 재정에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는 기성회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³⁾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로서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고등교육법」 제3조⁵⁾에 따른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안 제2조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의 2013년 기준 재학생 및 기성회비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 국립대학 재학생 및 기성회비 현황 : 2013년

(단위 : 명, 천 원)

대학명	재학생 수	기성회비
강릉원주대학교	8,663	30,670,963
강원대학교	24,676	80,085,606
경남과학기술대학교	3,272	18,625,120
경북대학교	30,461	96,281,103
경상대학교	17,650	53,536,294
경인교육대학교	4,546	11,738,865
공주교육대학교	2,135	5,800,055
공주대학교	16,923	48,310,370
광주교육대학교	2,315	6,639,494
군산대학교	8,512	24,700,592
금오공과대학교	7,679	20,325,071
대구교육대학교	2,732	8,317,576
목포대학교	9,207	25,279,514
목포해양대학교	2,554	8,043,130
부경대학교	20,022	59,122,800
부산교육대학교	2,707	6,712,164
부산대학교	29,829	107,481,94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658	53,461,328

⁴⁾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⁵⁾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대학명	재학생 수	기성회비
서울교육대학교	3,142	8,646,373
순천대학교	8,587	24,494,296
안동대학교	7,230	20,152,803
전남대학교	25,956	87,013,121
전북대학교	23,270	78,285,202
전주교육대학교	1,701	4,535,083
제주대학교	12,186	36,447,420
진주교육대학교	1,931	5,197,106
창원대학교	10,467	30,787,068
청주교육대학교	1,799	4,637,403
춘천교육대학교	2,146	5,386,880
충남대학교	23,783	79,414,515
충북대학교	18,106	60,163,187
한경대학교	2,516	18,871,816
한국교원대학교	5,631	17,065,255
한국교통대학교	7,562	33,214,85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57,446	76,550,000
한국복지대학교	475	1,022,496
한국체육대학교	3,132	8,465,440
한국해양대학교	7,704	21,653,807
한밭대학교	3,806	32,163,515
계	528,117	1,319,299,637

* 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 수치임

* 자료 : 교육부

[표 2]에 따른 2013년 기성회비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NABO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⁶⁾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경우,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표 3]과 같이 2016년 7,152억 2,900만 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3조 7,820억 9,400만 원으로 추정된다.

표 3 | 국립대학 기성회비 총액의 2분의 1 교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6~2020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기성회비 50% 교부	715,229	735,255	755,842	777,006	798,762	3,782,094

* 자료 :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립대학에 기성회비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 4]와 같이 2016년 7,152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3조 7,821억 원으로 추정된다.

표 4 | 국립대학 기성회비 총액의 2분의 1 교부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 2016~2020년 (단위 : 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기성회비 50% 교부(안 부칙 제2조)	7,152	7,353	7,558	7,770	7,988	37,821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⁶⁾ 국회예산정책처, 『2013~2017년 NABO 재정전망』, 2013.12. p. 7, 2013년 1.3%, 2014년 2.5%, 2015년 2.7%, 2016년 3.0%, 2017년은 2.8%이며, 2018년 이후는 2.8%로 가정함.